조선봉건왕조시기 서원성원들의 임명과 신분관계를 통하여 본 서원의 반인민적성격

최 연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봉건사회의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봉건적질서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봉건제 도를 옹호하는데 복무하였습니다.》

(**《김일성**전집**》** 제48권 66폐지)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중앙과 지 방에 봉건교육기관들을 설치해놓고 그것 이 봉건제도를 옹호하는데 철저히 복무하 도록 하였다.

서원역시 조선봉건왕조시기 교육기관의 하나로 설치되였다. 그러나 서원은 순수한 교육기관만이 아니였으며 봉건국가의 지 방통치실현에 적극 복무하는 《자치》기 관적성격도 가지고있었다.

이 글에서는 봉건국가의 지방통치실현 에 복무한 서원성원들의 임명과 그 신분 관계를 통하여 서원의 반인민적성격에 대 하여 밝히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서원의 반인민적성격은 서 원성원들의 임명에서 알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성원에는 지방봉건유생들이 임명되였다. 서원규정에 《서원을 주관하는자는 반드시 5리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규정되였는데 이때부터 서원성원들은 대체로 해당 고을량반이거나 혹은 린접 고을의 량반들로 임명하는것이 관례로 되였다. 그렇기때문에소수서원은 풍기고을이나 영천의 유생들이,함양의 람계서원은 함양 혹은 진주의 유생들이 그 성원으로 되여있었다.*

* 《대동야승》 권2 해동잡록 3

그러나 간혹 중앙의 고위판료들과 고을 유생들이 함께 서원의 직무를 담당하는 때 도 있었다. 특히 처음에는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의 서인파계렬 서원에서 그러한 현 상들이 나타났다.

실례로 전라도 강진고을에 있는 남강사를 보면 원장, 원이는 정부의 원로재상으로, 진신장의는 본 고을의 성주와 관찰사, 절도사로, 집강은 도내 및 본 고을의 문벌문학선비로 임명하였다.*

*《남강원지》 권2 설단유사품목

자료에서 보는바와 같이 중앙의 고위관료들과 지방관 그리고 고을유생들이 서원의 직무를 나누어 담당하였다는것을 알수있다. 중앙관료들이 맡은 원장을 경유사 또는 진신유사, 고을유생들이 맡은것을 향유사 또는 장보유사라고 하였다.

물론 서원의 규모나 그 등급에 따라 서원 성원들의 직무담당이 차이나지만 17세기에 는 초기의 서원처럼 고을유생들만으로 구성 한것이 아니라 중앙관료들까지도 포함하여 그 성원을 구성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중앙관료들을 서원의 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당시 당파싸움과 관련되였다.

인조반정으로 집권한 서인파들은 경상도 남인파와의 세력경쟁을 위하여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에 자기파의 서원들을 많이 세웠을뿐아니라 서원의 운영에도 직접 참가하였으며 그 과정에 중앙관료들이 서원의 원장, 원이를 담당하게 되였다. 다시말하여 중앙관료들은 그들대로 자기 당파의 세력확장을 위해 지방유생들과 관계를 두터이 하는것이 유리하였고 따라서 지방서원들에 자기 파벌의 현임관료들을 개입시키고있었던것이다.

한편 지방유생들도 중앙판료들과 관계를 잘 가지면 서원의 위신과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질뿐아니라 중앙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타산으로부터 중앙관료들을 서원의 원장으로 임명

하였던것이다.

《일성록》에는 《비록 원장으로 말하면 재상이 서원의 일을 멀리서 다루니 제대로 일을 할수 없으며 또 역시 서원유생들이 권세를 믿는 단서가 없지 않다.》* '고 기록되여있으며 《미천서원일기》에는 《지금 한가지 대책이 있으니 대감이 만약 원장을 맡아 지방고을에서 구제하고 령남에 통문을 돌리면 배나 쉬울것이다. 모든 일은 두령이 있어야 후에 계속 이을수 있으니 원장의 말한마디는 실로 천금같이무겁다.》라고 서술되여있다.*2

*¹《일성록》 고종 5년 9월 3일

*2《미천서원일기》 권3 왕복서류

우의 자료는 서원이 중앙관료들에게 의 거해야만 그 권세를 믿고 고을에서 마음대 로 행동할수 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결국 서원들은 그 운영을 위하여 중앙 관료들에게 기대를 가지지 않을수 없었으 며 이로부터 후시기에는 서원측에서 그들 에게 원장으로 취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 을수 없었던것이다.

이러한 중앙관료의 원장취임요청은 다같은 리해관계로부터 경기와 충청도, 전라도의 서인파들뿐아니라 점차 다른 파들에게까지도 전파되여 제각기 자기 당파에 속한 중앙관료들을 서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상도 남인화서원들은 다른 파들과는 달리 많은 경우 고을원을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것은 바로 고을원이 서원원장을 겸해야 그를 서원운영에 적극 끌어들여 협조도 받을수 있고 고을의 정사도 서원에 의거하여 진행해나갈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고을원이 원장을 겸한다고 하였지만 실 제상 서원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지방봉건 유생들이였다. 그것은 다음의 자료가 잘 말 해주고있다.

《원우(서원)가 흥하는가, 흥하지 못하

는가 하는것은 서원성원들이 어진가, 아닌 가에 달려있다. 경유사, 도유사는 서원일 을 멀리서 처리할뿐이고 모든 일은 오직 향 유사를 옳게 임명하는데 있으니 잘 가려 서 선택할것이다.》*

* 《남강원지》 권2 절목 1813년

이것은 결국 원장을 겸임한 고을원들은 항시적으로 서원에 붙어있지 못하는 조건 에서 서원일을 기본 주관한것은 지방유생 들로 임명된 향유사들이였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원장직무에 중앙관료나 고을원이 임명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직무임명에서 제 외된것은 서원에서 제사지내는 사람들의 후 손들이였다.

당시 해당 서원의 배향인물들의 후손들은 여러가지 형태로 서원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백운동서원의 성립초기에 순흥안 씨들이 서원건립에 적극 협조하였고 경상 도 관찰사 안협이 서원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경제적지반을 마련해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한것은 그들이 제사대상인 안향의 후손들이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서원에서는 배향인물들의 후손 들을 원장직에 임명하는것을 금지하였다.

서원원장직에 배향인물의 후손들이 직접 임명되는것은 규정상 어긋나는 일이였다. 하 지만 이것은 한갖 규정이였고 실지로는 후 손들이 원장직에 임명되는 때도 있었으며 특 히는 배향인물들의 후손들이 사는 고을에 서 원이 설립되는 경우 더욱 심하였다. 그것은 자기 조상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우기는 서 원자체가 그 운영을 위한 경제적협조를 요 구하였기때문이다. 그리하여 점차 서원의 원 장직에 배향인물들의 후손들이 임명되는 현 상이 늘어나고있었다.

서원성원의 임명방법은 서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중앙관료 혹은 고을 원을 원장직에 임명하는 경우에는 서원에 유생들이 모여 중앙관료나 고을원을 지명 하며 추천된 관리들은 서원유생들과 같은 당과, 동향, 배향된 인물의 후손과 일정한 연고가 있어야 하였다. 이때 추천된 사람 에 대해서는 유사나 유생 등이 수도에 가 서 원장으로 취임해줄것을 요청하는 편지 를 바치고 승인을 받아왔다. 그렇기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서원의 원장직을 겸임하 는 경우도 있었다.

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장의, 유사 등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봄이나 가을에 제사가 끝난 자리에서 추천문건을 만들고 그가운데 권점(이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것)하는 방법으로 3명의 추천을 받은 후 이것을 원장에게 통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만약 적당한 인물이 아닌 사람이 추천되었을 경우 주변의 서원에서 해당 서원에 통문을 보내여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성실히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교체할 경우 혹은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모임에서 적임자를 다시 천거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여 임명하도록 하였다.*

* 《남강원지》 권2 절목

고을유생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원장 및 별유사가 문관, 생원, 진사가운데서 신망있는 사람을 각각 추천하여 세 사람이 넘지 않도록 하며 사사로이 부탁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¹ 하였으며 각자가 상, 하유사를 감당할만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종이에 그 이름을 쓰고 권점하고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유사로 삼는다고 하였다.*²

*¹ 《소수서원잡록》 원1 상장백운동원 장하사

*² 《병산서원원규》

즉 봄, 가을의 제사때에 유생들이 모여 적 당한 사람을 천거하고 이것을 권점하는 방법 으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처럼 서원성원들로는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해당 고을의 유생들과 고을원, 지

어 중앙관료들까지도 임명되였다.

다음으로 서원의 반인민적성격은 서원 성원들의 신분관계에서 알수 있다.

서원성원으로 선출될수 있는 신분은 량 바이였다.

서원성원을 량반으로 규정한것은 여러 서원규정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서원성원은 전직, 현직을 론할것 없이 서 원록의 자손으로 하고 또한 유생들속에서 택해야 한다.

장의는 문관음직의 전직관료 및 관찰사, 고을원으로 추천하고 유사는 유생들가운 데서 두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원장, 강장, 진신장의, 색장, 유사는 도 안의 덕망있고 행실이 바른 선비에게 맡 기는것이 내려온 규정이다.

이처럼 서원성원의 신분은 반드시 량반 출신으로 규정되여있었다.

그러나 모든 고을의 서원성원을 다 같은 량반출신이라고만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지방마다 량반세력지반이 달랐고 서원의 지위도 달랐기때문이다. 특히 조선봉건왕조후반기 봉건적신분질서가 문란해지면서 서원성원의 신분관계도 변화되였다고 볼수 있다.

문벌량반들이 많은 남쪽지역에서는 해당 고을을 대표하는 문벌량반들이 서원성원으로 되였다면 문벌량반들이 적은 북쪽지역에서는 품관들이 그 성원으로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서원직을 둘러싸고 문벌량반들 과 품관들, 서얼들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고을의 정사에 영향을 주는 서원의 세력 권을 누가 쥐겠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심 각한 싸움이였다. 특히 원장직을 둘러싼 문 벌량반들사이의 대립이 제일 심하였다.

문벌량반들은 누구를 제사대상으로 하며 제사대상인 경우에도 누구를 앞에 내세우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었다. 이 싸움은 누가 원장직을 담당하는가 하

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었다.

실례로 1662년(현종3년)에 황준량의 후 손들이 경상도 풍기의 욱양서원 원장이 되 자 황준량을 제사지내려고 기도하였으며 충 청도 회덕의 정절사의 경우 송유의 후손 들이 원장을 맡았을 때 그를 몰래 제사지 내려다가 이미 제사지내던 박팽년의 후손 들과 분쟁이 일어난 일도 있었다.

이처럼 문벌량반들은 서원직을 리용하여 저들의 리속을 채우려고 하였으며 이로부터 서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치렬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당시 서원직을 둘러싸고 문벌량반들과 신흥량반들, 서얼들사이에도 대립관계가 조성되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이르러 봉건적신 분제도가 점차적으로 문란해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량반으로 등장하는자 들이 많아졌다.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봉건적토 지소유관계에서 신분적속성이 날로 풀려져 나가고 상인지주층이 더욱 늘어나고있었다. 이 상인지주들과 상인자본가들속에서는 쪽 보를 위조하거나 본래의 량반과 혼인관계 를 맺거나 돈을 주고 량반의 신분과 벼슬 을 사는 방법으로 량반행세를 하는자들이 생 겨났다. 이렇게 등장한 량반들은 어떻게 해 서나 고을에서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 하여 류향소의 향임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고을원과 결탁하여 고을안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나중에는 향안은 물론 서 원이나 향교의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 량반 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였다.

서원직을 둘러싼 대립에는 서얼들도 끼여있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서얼허통요구는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었으며 봉건정부도 할수 없이 일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봉건국가는 서자출신도 일정한 벼슬에 등용한다는 이른바 《서얼허통》에 관한 규 정을 봉건국가의 법전인 《대전통편》(1785년)에까지 박아넣지 않을수 없었다.

서얼허통으로 서얼들의 지위는 조금씩 개 선되여갔으며 지방에서의 향임(류향소 품관), 유임(향교나 서원성원들)도 허용되였다.

이렇듯 서얼들에게도 고을원을 제외한 직무에 임명할수 있다는것이 허용되였다. 그리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재력과 권한을 가진 서얼들이 앞장에서 서얼출신 선조를 내세우는 서원을 세우기도 하였다. 서얼허 통에 대한 국가적조치가 취해지고 서얼들 이 계속 반항을 하였지만 대체로 문벌량 반들은 서얼들의 서원직에로의 진출을 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서 얼허통에 관한 규정은 나왔지만 서얼허통 의 문은 좁았으므로 실제로 벼슬하는 서 얼들의 수는 매우 적었다. 봉건국가는 서 얼출신의 무과합격자들을 선전관 등으로 임 명한다고는 하였으나 실지 임명된자는 몇 명 안되였으며 때로는 한명도 없는 경우 도 있었다. 봉건정부가 서얼출신을 관리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관리임명사업을 담당 한 관리들을 귀양보내기도 하였으나 그것 은 서얼들의 반항을 눅잦히기 위한 하나 의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지방고을에서는 여전히 서얼들이 문 벌량반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그들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심해 졌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지역들에서는 서 얼들이 서원직에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주변 서원들에서 통문을 돌려 이것을 취소하고 교 체시킬것을 요구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

서원성원들은 중앙관료나 고을원, 지방의 유력토호들로 임명되였으며 그들의 출신을 보면 일반백성들이 아니라 량반들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로부터 서원은 인민들의 리익을 대변한것이 아니라 봉건통치배들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국왕의 전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봉건국가의 지방통치실현에 복무한 반인민적인 기관이였다.